

의안번호	2220471
의 퇴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6. 10. 1.
추 계 번호	26B39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등)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절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6조의3(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2.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분양 및 사후관리 3.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4. 그 밖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3(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 범위 및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6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센터의 소재지, 규모, 운영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칭)은퇴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센터의 업무,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중 관련 사항

- (은퇴견 통합관리) 은퇴한 봉사견을 통합하여 보호·관리하고, 민간 입양을 추진하는 ‘(가칭)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추진(’27~)
- 은퇴견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양을 추진하던 것에서 통합적으로 입양 정보 제공 및 입양자 선정·관리
 - *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26) → 지역 선정 및 착공(’27) → 센터 운영(’28)
 - **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입양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25~)
 - 적정 면적, 관리 인력, 건강관리 방안 등 은퇴견 복지를 고려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세 부기준 마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2025.2.) 중 발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assembly.go.kr